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5902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050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590282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유진

변론 종결 2021. 10. 7.

판결 선고 2022. 1. 13.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985,045원 및 그 중 1,900,945,720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3. 12.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61,458,9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1,458,94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2016. 4. 27. 보증기간 2016. 4. 27.부터 2017. 4. 26.까지, 1) 보증금액 297,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7. 9. 11. 보증기한 2017. 9. 11.부터 2018. 9. 10.까지, 2) 보증금액 1,1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7. 12. 22. 보증기한 2017. 12. 22.부터 2018. 12. 21.까지, 3) 보증금액 495,000,000원⁴⁾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제1, 2, 3보증약정을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 C는 위 각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제1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제2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G은행으로부터, 제3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7. 28. ~ 2019. 8. 1.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 및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9. 11. 13. F은행에 270,528,690원(= 원금 267,300,000원 + 이자 3,228,690원)을, 2019. 11. 13. G은행에 1,182,101,325원(= 원금 1,170,000,000원 + 이자 12,101,325원)을, 2019. 11. 13. H은행에 450,255,815원(= 원금 445,500,000원 + 이자 4,755,81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940,11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은 1,900,945,720원이 남게 되었고, 위약금은 4,038,900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25원이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2019. 4.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피고 A, B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D는 2015. 11.경 피고 A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2015. 5.경 I5)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I에 수입축산물을 공급하여 왔으며, 2018. 7.경 M6)과 수입공급계약을 체결하고 M에 수입축산물을 공급해왔다.

2) N, I는 2019. 7. 1. 피고 D 사이에, 'O은 2019. 7. 1. 현재 피고 D로부터 2019. 6. 3.부터 2019. 6. 21.까지 매수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6,506,501,803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I는 2019. 7. 1. 현재 피고 D로부터 2019. 6. 3.부터 2019. 6. 21.까지 매수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1,140,264,871원임을 확인하며, 피고 B이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A, B은 2019. 7. 9.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B, M, I, 근저당권자는 피고 D, 채권최고액은 7,658,079,699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제1 선순위 근저당권 (2012. 12. 28. 제311006호)	P은행 (근저당권부질권자)	640,000,000원	피고 B	640,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2번) 640,565,479원
제2 선순위 근저당권 (2013. 1. 24. 제18565호)8)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Q (근저당권부질권자)	810,000,000원	160,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3번) 79,208,014원	
제3 선순위 근저당권 (2018. 2. 26. 제32357호)9) 근저당권자 G은행	S (근저당권부질권자)	840,000,000원	M	712,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4번) 714,641,290원
	T (G은행의 승계인)	700,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5번) 125,358,710원		
제4 선순위 근저당권 (2018. 12. 13. 제2277 05호)10) 근저당권자 U은행	S (근저당권부질권자)	960,000,000원	M	414,673,382원	배당액(배당순위 6번) 415,082,374원
	T (U은행의 승계인)	557,556,925원	배당액(배당순위 7번) 143,527,646원		
제5 선순위 근저당권 (2019. 4. 2. 제45722호)11) 근저당권자 AA	S (근저당권부질권자)	840,000,000원	M	437,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8번) 438,621,129원
	Q (근저당권부질권자)	160,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9번) 80,791,986원		
	T (U은행의 승계인)	500,000,000원	배당액(배당순위 10번) 236,786,885원		
합계	3,450,000,000원		4,281,230,307원	2,874,583,513원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제4, 5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제4 선순위 근저당권 (2018. 12. 13. 제227705호)	1	이 사건 아파트	2,235,000,000원
2	서울 동작구 V아파트 W호	867,000,000원	
3	서울 성북구 X 외 11필지 Y아파트 Z호	690,000,000원	
합계	3,792,000,000원		

제5 선순위 근저당권 (2019. 4. 2. 제45722호)	1	이 사건 아파트	2,235,000,000원
2	서울 동작구 V아파트 W호	867,000,000원	
3	서울 성북구 X 외 11필지 Y아파트 Z호	690,000,000원	
4	[건물] 경기도 광주시 AB에 있는 AC동	1,630,872,200	
5	[토지] 경기도 광주시 AB		
6	[건물] 경기도 광주시 AB에 있는 AD동		
7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E 외 4필지	3,710,016,500원	
8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E		
9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F		
	10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G	
	11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H	
	12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I	
합계	9,132,888,700원		

마.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경매

1) 별지1 목록 제4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J, AK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L(AM 중복)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N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O(AP 중복)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별지1 목록 제7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AJ, AQ유한회사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AR(AS 중복)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D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U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948,999,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8. 31.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940,783,798원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에는 피고 D가 근저당권자로서 61,458,94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로서 출석하여 피고 D에 대한 배당금 61,458,945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9.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AJ, 법원행정처장, AA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904,985,045원(= 보증채무이행금 1,900,945,720원 + 확정손해금 425원 + 미수위약금 4,038,900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1,900,945,7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2.까지 약정이율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7. 9. 이후인 2019. 7. 28. ~ 2019. 8. 1.에 피고 A의 대출이자 지급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1.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A과 피고 B, C에 대한 구상보증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6. 4. 27., 2017. 9. 11., 2017. 12. 22. 체결되었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 점, 피고 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9. 7. 9.로부터 불과 20여일 남짓 경과한 후인 2019. 7. 28.경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2019. 8. 1.경 G은행과 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연체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채권 등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9. 11. 13.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보증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권자 또는 자신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기초사실의 라. 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3,4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3갑 제1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제4, 5순위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공동담보부동산의 목록과 그 가액은 앞서 본 기초사실 라. 2) 표 기재와 같으며, 제4순위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공동담보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3,792,000,000원, 제5순위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공동담보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9,132,888,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4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9,6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2,235,000,000원)과 공동담보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의 가액(1,557,000,000원)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565,822,785원(= 960,000,000원 ×

2,235,000,000원/3,792,000,000원,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5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1584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2,235,000,000원)과 공동담보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의 가액(6,897,888,700원)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205,564,751원(= 840,000,000원 × 2,235,000,000원/9,132,888,700원)이 산정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2,421,387,535원{= 제1 선순위 근저당권(2012. 12. 28. 접수 제311006호) 및 제2 선순위 근저당권(2013. 1. 24. 접수 제18565호) 810,000,000원 + 제3 선순위 근저당권(2018. 2. 26. 접수 제32357호) 840,000,000원 + 제4 선순위 근저당권(2018. 12. 13. 접수 제227705호) 565,822,784원 + 제5 선순위 근저당권(2019. 4. 2. 접수 제45722호) 205,564,751원}으로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2,235,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의 일반채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오지애

판사김진하

별지

1) 이후 보증기한이 2017. 4. 26.에서 2018. 4. 26.로 변경되었다.

2) 이후 보증기한이 2018. 9. 10.에서 2019. 9. 10.로 변경되었다.

피고 A의 사내이사였던 L이다.

6)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 수정구 J건물, R호이며, 대표이사는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B이다.

7) 아래 이 사건 배당표 채권금액 원금 기준

8)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9) 근저당권자 G은행

10) 근저당권자 U은행

11) 근저당권자 AA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사해행위 당시) 기준 시가에 대한 입증은 없으나, 피고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실행된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으로 그 가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과 경매절차(감정평가기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는 각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갑 제1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참고자료 1 참조

13) 배당기일인 2021. 8. 31. 기준 실제 채무액 원금이 4,291,230,307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실제 채무액은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4)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본다.

15)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본다.